

「이천시 유통형 지구단위계획 및 창고시설 개발행위허가 통합 심의 기준」 개정 공고

무분별한 창고시설 건립으로 기반시설 부족에 의한 교통체증 및 민원발생, 사업별 입지기준 적용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체계적, 계획적으로 관리하고자 제정한 『이천시 유통형 지구단위계획 및 창고시설 개발행위허가 통합 심의 기준』을 일부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6월 24일

이천시장

1. 공고명 : 「이천시 유통형 지구단위계획 및 창고시설 개발행위허가 통합 심의 기준」 개정
2. 주요내용
 - 가. 제4조, 제6조제2항에 따른 유통형 지구단위계획의 완화심의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대신할 수 있다.※ 세부사항은 붙임 기준 참고
3. 기타 문의사항은 이천시청 도시과(☎031-644-2661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1. 이천시 유통형 지구단위계획 및 창고시설 개발행위허가 통합 심의 기준(개정) 1부. 끝.